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29
----------	------

2022년 4월 4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3.10. 서윤기 의원(김기덕 의원 등 10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2.3.16.

다. 상정 일자 : 제30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2년 4월 4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의원 의정활동의 능률적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의회 직원 등에 대한 교육연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과 의회 직원 등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 아울러, 위원회 명칭 변경, 기능 추가 정원 확대, 의장의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의정 전반에 관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거나 고양 및 지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의정 전반에 관한 핵심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명칭 등을 변경함(안 제1조·제2조·제5조·제11조)
- 의회 교육연수에 대한 의장의 책무 등을 명시함(안 제3조·제4조)
-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명시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의원뿐 아니라 의회 직원 등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육연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교육연수 적용범위 확대(안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11조)

- 안 제1조는 교육연수 대상이 시의회 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거나 그 역량을 고양 및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교육연수”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어휘가 중복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일부 자구를 수정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1> 제1조의 현행 조례,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거나 그 역량을 고양 및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 등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는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교육연수활동의 적용대상을 서울시 의원 외에 시의회 직원까지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지원관 신설('22년 27명, '23년 28명 채용 예정)로 시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안정적인 의회 인력과 새로운 인력이 확보되는 만큼 시의회 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연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표-2> 제2조의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u>  <신 설>  <신 설>	제2조(적용범위) —— <u>다음 각 호의 대상-</u>  _____  1. <u>서울특별시회의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2.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u>

- 안 제5조는 교육연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의원 교육연수”를 “의회 교육연수”로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로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 그러나 지방공무원인 시의회 직원의 경우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교육훈련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기본계획 수립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수정이 요구됨.

<표-3> 제5조의 현행 조례,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_____ 의회 교육연수 _____ _____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_____ - 4년(직원 등의 경우 5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_____ _____ _____

**3 의회 교육연수의 기본원칙 확대(안 제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안 제3조는 단순 자구 수정 외에 의회 교육연수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교육연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직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제5항 신설)과 교육연수를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제6항 신설)를 명시하였음.
- 이는 교육연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시의회 직원 등과 관련해서도 교육연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적용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육연수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함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표-3> 제3조의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본원칙) ① <u>서울특별시의회</u>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 ————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 ————.</p> <p>⑤ 의장은 직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4 교육연수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8조)**

- 안 제8조는 기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명칭을 ‘교육연수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연수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음.
- '21년 기준 의원 역량개발 사업은 기본·역량강화·특별 교육으로 구성되어 의정활동의 핵심 역량을 다루고 있으며 의원 수요에 따라 외부 위탁교육이 가능한 반면, 시의회 직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부 기관을 통해 의정활동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음.

<표-4> '21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현황

분 야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기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예방교육</li> <li>• 인권교육</li> <li>• 행동강령 준수교육</li> </ul>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
역량 강화 교육	직 무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실무기본</li> <li>•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li> <li>• 조례입법, 시정질문</li> </ul>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ndl한 자체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리더십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회 리더십 과정</li> <li>• 소통과정(민원대응갈등관리)</li> </ul>	
특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위탁교육</li> <li>• 민간기관 위탁교육</li> </ul>	자체운영이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한 장·단기 위탁교육

<표-5> '21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현황

교육개설 기관		교육 과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알기 쉬운 의회협력 실무</li> <li>• e-보도자료 이해 및 작성법</li> </ul>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운영 및 지원 실무</li> <li>• 법령체계와 입법절차</li> <li>•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li> <li>• 자치입법사례</li> </ul>
법제처	이러닝 교육	•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집합 교육	•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과정 등

○ 교육연수위원회가 교육연수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 외에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시의회 교육연수활동의 내실화와 다변화(의원과 직원 그룹별 맞춤형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 체계상 교육연수위원회 기능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제1항에서 “의장은 의원 및 직원 등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연구하기 위하여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로 수정하고, 각호 중 하나로 “교

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자문·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을 위한 합의제 기구로, 직접 연구 수행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한편 안 제8조제2항은 위원회 구성 인원 한도를 기존 “9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부문별(교육연수 전문가, 의원, 의회 관련 인사) 위원 수는 각각 “3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였음. 이는 의회 교육연수 적용대상 및 교육연수위원회 운영범위 확대에 따른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sup>1)</sup> 필요에 따라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표-6> 제8조의 현행 조례,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신설>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의원 및 직원 등의 교육연수에 대한 심의·자문 및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의원 및 직원 등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연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회 교육연수위원회(이하

1)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은 25명 이내, 정책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p>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1. ~ 4. (생략)</p> <p>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그 밖에 지방 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lt;후단 신설&gt;</p>	<p><u>회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u></p> <p>② 위원회는 _____ _____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25명 _____ _____ _____ 10명 이내, 의원 10명 이내, 그 _____ _____ 10명 이내의 _____ _____. 이 경우 <u>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u>“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b>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b></p> <p>5. (현행과 같음)</p> <p>② &lt;수정안 ③과 같음&gt;</p>
--	---	---

**5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교육연수활동 대상을 시의원뿐 아니라 의회 직원 등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교육연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

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응하여 의정 활동 및 의정지원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조와 안 제8조의 일부 조문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5조의 직원 대상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상위 법령에 맞게 직원 등의 경우 5년으로 수정이 요구됨.
- 의원과 의회 직원 등 서울시의회가 실시해야 할 교육대상의 통합에 의한 교육연수활동의 효율성 강화라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상세한 교육연수 의무를 부과받고 그로 인해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받는 공무원과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을 동일한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문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분과 업무 특성에 따라 교육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 **6. 토 론 요 지 : 생략**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직원은 상위 법령에 맞게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며, 교육연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나. 수정 주요골자**

- 의회 교육연수의 목적을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관련해 직원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안 제8조).

###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별첨 참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129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2년 4월 8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직원은 상위 법령에 맞게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며, 교육연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2. 수정의 주요내용

- 의회 교육연수의 목적을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관련해 직원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예산조치 : 원안과 같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의정 전반에 관한”을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  
한”으로 하고, “핵심 역량을 함양하거나 그 역량을 고양 및 지원할  
수 있는”을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를 “근로자”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심의·자문 및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5명”을 “15명”으로 하며, “10명 이내, 의원”을 “5명 이내, 의원”으로 하고, “10명 이내, 그”를 “5명 이내, 그”로 하며, “10명 이내의”를 “5명 이내의”로 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한다.





회”라 한다) 안팎에  
서 의원의 교육연  
수 기회가 자유롭  
고 충분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  
-----  
-----  
-----  
-----.

③·④ (현행과 같  
음)

⑤ 의장은 직원 등  
의 의정 전반에 관  
한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정책  
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⑥ 의장은 의회 교  
육연수를 효과적이  
고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 의원 의정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  
그램을 개발·시행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  
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  
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  
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  
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  
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등이 의원 의  
정활동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도록 하  
기 -----  
-----.

② -----  
-----  
-----  
-----  
서울특별시의회역  
량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  
-----.

③ -----  
-----  
----- 센  
터-----  
-----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p>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돼야 한다.</p>	<p>----- -----.</p>	
<p>1. 2. (생략)</p>	<p>1. 2. (현행과 같 음)</p>	<p>(개정안과 같음)</p>
<p>3. <u>의원역량개발센 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 한 사항</u></p>	<p>3. <u>센터</u>----- ----- -----</p>	<p>(개정안과 같음)</p>
<p>4. ~ 8. (생략)</p>	<p>4. ~ 8. (현행과 같 음)</p>	<p>(개정안과 같음)</p>
<p>③·④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 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8조(<u>교육연수위원 회</u>) &lt;신설&gt;</p>	<p>제8조(<u>교육연수위원 회 구성·운영</u>) ① 의장은 의원 및 직 원 등의 교육연수 에 대한 <u>심의·자 문 및 교육연수 관 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기 위 하여 <u>서울특별시의 회 교육연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u></p>	<p>제8조(<u>교육연수위원 회 구성·운영</u>) ①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자문하기</u> ---- ----- ----- <u>의회</u> --- ----- -----</p>

영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 4. (생략)

② 위원회는 -----

-----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삭제)

1. ~ 4. (삭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25명 -----  
-----  
-----  
-----  
----- 10명 이내,  
의원 10명 이내,  
그 -----  
----- 1  
0명 이내의 -----  
-----  
-.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  
-----  
----- 의회 교육연수 -----  
-----  
-----.

② ----- 15명 -----  
-----  
-----  
-----  
----- 5명 이내,  
의원 5명 이내, 그  
-----  
----- 5명  
이내의 -----  
-----  
-----  
-----  
-----.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장(이하 “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을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직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을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등이 의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서울특별시의회역량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의원 교육연수”를 “의회 교육연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연수위원회)”를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의”는 “의원 및 직원 등의”로 하며, “의회 의원”을 “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제8조제2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하고, “3명 이내, 의원”을 “5명 이내, 의원”으로 하며, “3명 이내, 그”를 “5명 이내, 그”로 하고, “3명 이내의”를 “5명 이내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1조 중 “의원 교육연수활동”을 “의회 교육연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의회의원</u> <u>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u> <u>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u> <u>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u> <u>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u> <u>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u> <u>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u> <u>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서울</u> <u>특별시의회의의원(이하 “의원”이</u> <u>라 한다)에게 적용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u> <u>시의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및</u> <u>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u> <u>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u> <u>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u> <u>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u> <u>다.</u></p> <p>제2조(적용범위) ----- <u>다음</u> <u>각 호의 대상</u>----- -----.</p> <p>1. <u>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이하</u> <u>“의원”이라 한다)</u></p> <p>2.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u> <u>라 한다) 소속 공무원·공무</u> <u>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서울</u> <u>특별시의회의의장(이하 “의장”</u> <u>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u> <u>(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u></p>
<p>제3조(기본원칙) ① <u>서울특별시의</u></p>	<p>제3조(기본원칙) ① <u>의장</u>-----</p>

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  
-----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  
-----  
-----  
-----  
-----.

② ----- 의회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직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등이 의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

② -----  
-----  
-----  
서울특별시의회역량개발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③ -----  
-----  
----- 센터-----  
-----  
-----  
-----  
-----  
-----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  
-----  
----- 의회 교육연수 -----  
-----  
-----  
-----  
-----

다만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③·④ (생략)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후단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센터-----  
-----  
--

4. ~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의원 및 직원 등의 -----  
--- 의회 -----  
-----  
-----.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15명 -----

-----  
-----  
----- 5명 이내, 의원 5명

이내, 그 -----

----- 5명 이내의 -----

-----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④ · ⑤ · ⑥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③ · ④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  
----- 의회 교육연수  
-----  
-----.